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 관련)

1. 적용기준

- 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정 처분기준 중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다. 과징금 부과는 처분 전년도에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과징금 부과권자가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2. 1일 과징금 부과기준

가. 검사기관

기준금액(원/일)	매출금액(백만원/연)
180,000	100 이하
220,000	100 초과 120 이하
260,000	120 초과 140 이하
300,000	140 초과 200 이하
340,000	200 초과 280 이하
380,000	280 초과 380 이하
420,000	380 초과 500 이하
460,000	500 초과 680 이하
500,000	680 초과 840 이하
540,000	840 초과 1,020 이하
580,000	1,020 초과 1,220 이하
620,000	1,220 초과 1,440 이하
660,000	1,440 초과 1,680 이하
700,000	1,680 초과 1,940 이하
740,000	1,940 초과 2,220 이하
780,000	2,220 초과 2,520 이하
820,000	2,520 초과 2,840 이하
860,000	2,840 초과 3,180 이하
900,000	3,180 초과 3,540 이하
940,000	3,540 초과 3,920 이하
980,000	3,920 초과 4,320 이하
1,020,000	4,320 초과 4,740 이하

1,060,000	4,740 초과 5,000 이하
1,100,000	5,000 초과

나. 먹는물관련영업자

기준 금액 (원/일)	업종별 매출금액(백만원/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 매업 포함)	수처리제 제조업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포함)
120,000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200,000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280,000	120 초과 200 이하	120 초과 170 이하	150 초과 350 이하
360,000	200 초과 340 이하	170 초과 250 이하	350 초과 700 이하
440,000	340 초과 540 이하	250 초과 360 이하	700 초과 1,200 이하
520,000	540 초과 800 이하	360 초과 500 이하	1,200 초과 1,850 이하
600,000	800 초과 1,120 이하	500 초과 670 이하	1,850 초과 2,650 이하
680,000	1,120 초과 1,500 이하	670 초과 870 이하	2,650 초과 3,600 이하
760,000	1,500 초과 1,940 이하	870 초과 1,100 이하	3,600 초과 4,700 이하
840,000	1,940 초과 2,440 이하	1,100 초과 1,360 이하	4,700 초과 5,950 이하
920,000	2,440 초과 3,000 이하	1,360 초과 1,650 이하	5,950 초과 7,350 이하
1,000,000	3,000 초과 3,620 이하	1,650 초과 1,970 이하	7,350 초과 8,900 이하
1,080,000	3,620 초과 4,300 이하	1,970 초과 2,320 이하	8,900 초과 10,600 이하
1,160,000	4,300 초과 5,040 이하	2,320 초과 2,700 이하	10,600 초과 12,450 이하
1,240,000	5,040 초과 5,840 이하	2,700 초과 3,110 이하	12,450 초과 14,450 이하
1,320,000	5,840 초과 6,700 이하	3,110 초과 3,550 이하	14,450 초과 16,600 이하
1,400,000	6,700 초과 7,620 이하	3,550 초과 4,020 이하	16,600 초과 18,900 이하
1,480,000	7,620 초과 8,600 이하	4,020 초과 4,520 이하	18,900 초과 21,350 이하
1,560,000	8,600 초과 9,640 이하	4,520 초과 5,050 이하	21,350 초과 23,950 이하
1,640,000	9,640 초과 10,740 이하	5,050 초과 6,200 이하	23,950 초과 26,700 이하
1,720,000	10,740 초과 11,900 이하	6,200 초과 6,820 이하	26,700 초과 29,600 이하
1,800,000	11,900 초과 13,120 이하	6,820 초과 7,470 이하	29,600 초과 32,650 이하
1,880,000	13,120 초과 14,400 이하	7,470 초과 8,150 이하	32,650 초과 35,850 이하
1,960,000	14,400 초과 15,740 이하	8,150 초과 8,860 이하	35,850 초과 39,200 이하
2,040,000	15,740 초과 18,600 이하	8,860 초과 9,600 이하	39,200 초과 42,700 이하
2,120,000	18,600 초과 20,000 이하	9,600 초과 10,000 이하	42,700 초과 50,000 이하
2,200,000	20,000 초과	10,000 초과	50,000 초과